

#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

## <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>

지방자치단체명: 서울특별시

소속기관명: 서울종합방재센터

내 용(품명)

○ 23 EA  
(세부품목은 불용물품내역 참고)

일 시

2020년 8월 5일

무상양여조건

불용물품 이동

무상양여 근거 사유

‘도시광산화 프로젝트 추진계획’ 시장 방침 제135호(2009. 3. 18.)  
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』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(불용품의 양여)

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.

인계자 : 인계관서의 장

물품관리관 직·성명 자원관리과장 (인)

물품출납원 직·성명 물품담당 조성현 (인)



## <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>

지방자치단체명 : 서울특별시

소속기관명 :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(SR센터)

위탁운영기관 (주)에코시티서울

무상양여 받은 뒤

물품의 분류

불용품(비품)

물품의 용도

재활용, 재이용, 폐기

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.

인수자 : 인수관서의 장 (주)에코시티 서울 이 동 현 (인)

물품관리관 직·성명 과장 안 명 상 (인)

